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41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평창군수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4조~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편의 보장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90,030천원 반영 계획임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04. 04. ~ 23. 0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불수용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박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 · 문화 지원 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박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박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3.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 협력
- 5.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지원
-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 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②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학교 밖 청소년 및 인솔교직원
- ③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학교 밖 청소 년이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④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수 있다.

(생략)

8.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다.
- 2. "학교 밖 청소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 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 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명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관련조문 : 제5조, 제7조

○ 비용발생요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비용은 2023년도 시행 예정 기준으로 작성 (단, 사업운영 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소요액		90,030	98,950	101,150	103,250	105,550	498,930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51,790	54,680	55,773	56,903	57,993	277,139
	사업비	27,860	29,940	30,830	31,754	32,907	153,291
	운영비	7,280	7,830	8,047	8,093	8,150	39,400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3,100	6,500	6,500	6,500	6,500	29,1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국비보조금) 및 자체재원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 여 정 은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211 - 22)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I
서	입	90,030	98,950	101,150	103,250	105,550	498,930
서	출	90,030	98,950	101,150	103,250	105,550	498,930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1,790	54,680	55,773	56,903	57,993	277,139
	사업비	27,860	29,940	30,830	31,754	32,907	153,291
	운영비	7,280	7,830	8,047	8,093	8,150	39,400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3,100	6,500	6,500	6,500	6,500	29,100
재원 조달		90,030	98,950	101,150	103,250	105,550	498,930
의존 재원	소 계	62,401	67,965	69,085	70,416	72,090	341,957
	국비보조금	62,401	67,965	69,085	70,416	72,090	341,957
	도비보조금	_	_	_	_	_	_
자체재원		27,629	30,985	32,065	32,834	33,460	156,973